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691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4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6918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 2014.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전 2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조립기와) 주택 105㎡를 철거하고,
나. 여주시 C 전 255㎡를 인도하고,
다. 2011. 7. 18.부터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사진화원

별지